

2020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사업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농가 및 영업자에게 1회까지 지원(단, 사후관리컨설팅 및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HACCP인증(의무적용 작업장 포함)을 받았으나 유효기간 만료 또는 폐업·소재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반납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각종 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및 인증신청 수수료, HACCP 교육 수수료 등 포함](단,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은 각종 검사비 등 소요비용 지원 제외)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축산물 HACCP 교육
 - 사육농장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관리 등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개소당 5백만원 ~ 12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개별 컨설팅

구분		방문횟수	사업비
영업장	도축장	12회(신규는 16회)	8백만원(신규는 12백만원)
	집유장	8회(신규는 10회)	5백만원(신규는 8백만원)
	사료제조공장	14회	10백만원
돼지, 젓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12회(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8회(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단체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시
돼지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회,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한우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회,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 컨설턴트별 컨설팅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가능

- 사후관리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액	컨설팅 내용
HACCP인증농가 및 영업자 ※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사상황 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 사항 지도

* 지원 항목: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등 HACCP인증 평가기준에 필
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가능

- 연장대상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액	컨설팅 내용
HACCP연장대상 농가 (인증 유효기간만료일이 해당연도에 포함되는 농가)	3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농가당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사상황 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 사항 지도

* 지원 항목: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등 HACCP인증 평가기준에 필
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연장심사수수료 등

* 자부담은 참여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가능

○ 사업 완료시점 : 농장,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신규에 한함)의 HACCP 인증(연 장)*을 받은 시점까지임

* 기존 도축장·집유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 지도가 확인되고, 당해연도 HACCP운용
평가에서 수경·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시점(재평가를 받은 도축장·집유장의 경우, 지적사
항 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컨설팅 지원 농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지도가 확인되고 당해 연도 HACCP
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시점(부적합을 받은 농가의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
실시)

*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당해연도 말까지 인증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장에 대한 예산은 각 지자체
에서 자체 이월 조치 후 집행가능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

1. 농장명(생산자단체, 영업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재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 농장면적, 축종(중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 질병 발생내용
 - * 집유규모, 집유농가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①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중도금, 잔금)을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